

2025년도 해외투자진출 유공자 포상계획

I. 포상목적

- 현지시장 개척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해외투자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공적 치하와 투자유치 고취
- 현지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 인식 확산

II. 포상개요

□ 대상자 및 규모

- 대상자 : 해외투자진출 유공기업, 지원기관 임직원
* 해외진출기업 협의체를 포함하여 개인 및 단체가 대상자 추천 가능
- 규모 : 해외투자 유공자 (7점), CSR 유공기업 (3점) 등 총 10점

□ 포상 훈격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

□ 시상일정

- 12월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
* 통합 포상수여 행사, 보도자료 배포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

III. 포상대상자 추천 및 결정

포상계획 공고 및 접수

○ KOTRA(본사·현지무역관 포함)

포상대상자 추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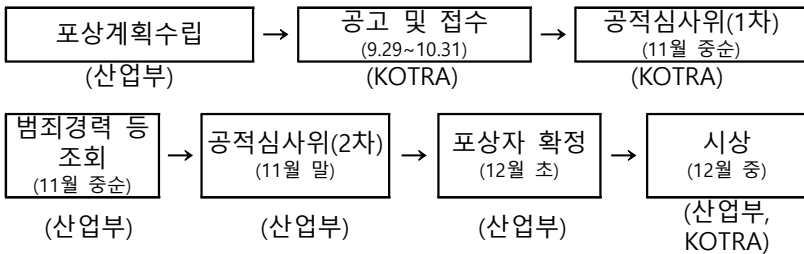
○ KOTRA 포상심사위원회*에서 신청자 심사 후 산업부에 포상대상자 추천

*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3~8명으로 구성

포상대상자 확정

○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 결정

<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>



IV. 추진 일정(안)

공고 및 접수 : 9.29(월)~10.31(금) (KOTRA 투자 M&A팀)

1차 공적심사위(KOTRA, 공적평가 및 추천순위 결정) : 11월 중순

2차 공적심사위(산업부, 결격사항 조회 및 포상자 적격심의) : 11월 말

최종 확정 : 12월초

별첨 : 1. 표창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

2.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. 끝.

<별첨 1>

자격기준 및 추천제한

1. 표창대상

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, 일반국민(외국인 포함), 기관·단체 등

2. 자격기준

가. 개인표창: 표창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

* 단, 창안상,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1) 공무원표창: 실 근무기간 3년 이상

*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(청원경찰, 별정우체국 포함)

*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
2) 국민표창: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

나. 단체표창: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

3. 추천제한

가. 공무원표창(공적상·창안상·협조상에 적용)

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도 적용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

* 창안상,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2) 휴직중인 자

3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(정부포상지침 중 3.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), 수사 중인 자

- 4)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- 5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6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7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

-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 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나. 국민표창(공적상·창안상·협조상에 적용)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**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**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)
- 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(개인)
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
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
- * 포상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6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7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8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-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다. 단체표창(공적상·협조상에 적용)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- 6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7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(단체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9) 기타 사회적 물의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·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del.go.kr\)](http://www.md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
·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
* [공정위 홈페이지\(www.ftc.go.kr\)]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범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
· 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(☎ 044 - 202 - 7537)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del.go.kr\)](http://www.md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·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4. 장관표창 취소

가.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
나.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
다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<별첨 2>

해외투자진출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

1. 기업 부문 : 대표자(해외법인장/지사장 등)

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
1. 해외법인의 국익 기여	
○ 매출을 통한 국익 기여	매출 개선, 이익 본국 송환 관련 활동 및 성과
○ 국내협력사와 상생	한국 부품/소재/장비 구매 높이기 위한 활동 및 성과
2. 해외법인의 현지사회 기여	
○ 현지사회 기여도	현지 고용/상생/사회공헌 활동 및 성과
○ 한인사회 기여도	한인네트워크 참여 및 현지경영 노하우 공유 관련 활동 및 성과

2. 유관기관 및 단체 부문 : 임직원

평가 항목(기준)	세부평가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투자지원 및 개선실적	
○ 해외투자지원활동 (상담, 설명회, 간담회, 현지조사 등)	지원활동 및 성과
○ 해외투자지원 개선실적 (지원내용 및 방식 개선한 실적 등)	개선활동 및 성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투자 지원 우수사례	
○ 지원 우수사례	지원과정 및 성과

※ 유관기관 및 단체 : KOTRA, 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무역보험공사, 대한상사중재원 등

3. 사회적책임경영(CSR) 부문 : 대표자(해외법인장/지사장 등)

평가 항목(기준)	세부평가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공헌	
○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기여	지역봉사, 기부, 교육/복지 지원, 취약계층 고용/지원 관련 활동 및 실적
<input type="checkbox"/> 윤리·투명 경영	
○ 준법·공정경영 및 투명성	법규 준수, 공정거래, 부패방지, 협력사와 상생 관련 활동 및 실적
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 권익·근로환경	
○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	안전한 작업환경, 복지제공, 청년/여성/장애인 고용, 인재양성 관련 활동 및 실적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책임	
○ 친환경 경영 노력	에너지 절감, 자원절약,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활동 및 실적

